

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(안)

의안 번호	77
----------	----

제안년월일 : 1999. 1. 20.

발 의 자 : 의회운영위원회
위 원 장

제안이유

- 그간 변화되어온 시대적 상황과 자치정신에 입각하여 현행 적용되고 있는 비현실적이고 불부합한 조례를 정비 또는 폐지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위원회구성 및 총수
 - 위원수 : 7명
- 존속기간 : 의결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.
- 위원선임 : 위원선임은 의장단에 위임.